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교 육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교원임용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응시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보완(안 제23조의2)

교원임용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응시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진행예정 ('20.6~7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 중 “자를”을 “자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장
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교육부장관(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의 권한을 위임·재위임받은 <u>자</u> <u>를 포함한다</u>)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 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제2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<u>자</u> <u>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</u> <u>기관의 장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481